

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
- 상정일자: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문화회관장 황영희)

가. 제안이유

-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고,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로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정비(안 제11조)
 - 1)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(30% 감면)
 - 2)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(10% 감면)
 - 3)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(10% 감면)
- 시설 사용료 정비(안 별표 1)

- 1) 국산 그랜드 및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료 삭제
- 2) 음향장비 스피커(2대 기본) 및 무대시설 무용매트 사용료 신설
- 3) 공연장 및 전시실 냉난방기 의무사용기간 명시 등

- 맞춤법 등 오류 항목 정비
-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찬규)

-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, 수강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 개정 내용으로
 안 제11조제3항12호에 기존에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에 사용료 및 수강료 20%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
 -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30% 감면토록 현실화하고
 -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10%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.

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구의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면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비용 부담을 줄여준 것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라고 봄.

- 안 제11조제3항12호을 신설하여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10%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,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봄.
- 그 밖에 용어의 순화, 명확화, 띠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